

의안 번호	388
----------	-----

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

전부개정조례(안)

## 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4. 11. 21.

전문위원 강영숙

1. 제안경위

가. 제출자 : 김경이 의원 외 16인

나. 의안번호 : 제388호

다. 제출일자 : 2024. 11. 06.

라. 회부일자 : 2024. 11. 15.

2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복지법」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생활지원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자 하며, 현행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수정하고 자립생활 실태조사와 체험홈에 대한 운영 및 지원을 명시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“중증장애인”에서 “장애인”으로 조례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제명 개정
- 나. “장애인” 등 용어 정의 정비 (안 제2조제1호)
- 다.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규정 명시(안 제6조)
- 라. 현행 운영 상황에 맞지 않은 규정 수정(안 제16조 및 제17조)
- 마. 자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홈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규정 명시(안 제19조)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- 다. 입법예고
  - 기 간 :2024. 11. 8 . ~ 2024. 11. 12 .
  - 의 견 : 의견 없음.

## 5. 검토의견

### □ 개요

- 본 전부개정안은 지난 2017.12.19.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“중증장애인”에서 “장애인”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「장애인복지법」을 반영하여 제명과 관련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,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

### □ 주요내용

#### ○ 제명 개정

「장애인복지법」 개정을 반영하여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」로 제명을 변경함

#### ○ 안 제2조(정의), 정비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53조(자립생활지원)1), 「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2)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, “중증장애인”을 “장애인”으로, “활동보조서비스”를 “활동지원급여”로, “활동보조인”을 “활동지원인력”으로 정비하였고, “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”, “체험홈”을 신설하여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

---

1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3조(자립생활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,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19., 2018. 12. 11.>

2) 「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1. 3. 30., 2013. 6. 4., 2015. 12. 29.>

2. “활동지원급여”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.

7. “활동지원인력”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

## ○ 안 제6조(실태조사) 신설

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필요시 국가 또는 서울시 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5조<sup>1)</sup>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을 위해 장애인 및 가족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고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1조<sup>2)</sup> 및 「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」 제5조제1항<sup>3)</sup>에서는 장애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고 있어, 필요시 국가 또는 서울시의 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은 적절하다고 사료됨

## ○ 안 제19조(자립생활 체험 흘 운영) 신설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19조<sup>4)</sup> 및 동법 제35조<sup>5)</sup>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책을 펼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“자립생활 체험 흘”은 성북구에서 1개소 운영중으로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및 지역거주 장애인이 일정기간 자립생활을 경험하며 자립생활 능력을 강화하고자 운영하는 전문적인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으로, 운영에 따른 지원 근거 규정 신설이 필요함

1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조(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, 배우자,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.

2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1조(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3) 「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」 제5조(계획의 수립) ① “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.

4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9조(사회적응 훈련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5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5조(장애 유형 · 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 · 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## □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이 입법취지와 내용이 적절하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불임 1 성북구 장애인 현황

(2024. 10월 기준)

연번	장애유형	합계	심한장애	심하지 않은 장애
	소계	16,916	5,871(34%)	11,045(66%)
1	지체	7,123	1,215	5,908
2	시각	1,846	378	1,468
3	청각	2,674	439	2,235
4	언어	161	87	74
5	지적	1,174	1,174	0
6	뇌병변	1,663	880	783
7	자폐성	339	339	0
8	정신	605	590	15
9	신장	874	639	235
10	심장	33	21	12
11	호흡기	88	75	13
12	간	128	2	126
13	안면	18	6	12
14	장루, 요루	144	11	133
15	뇌전증	46	15	31

- ※ 관내 장애인 중 심하지 않은 장애인 비율이 66%로 전체 장애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아 중증장애인(심한장애)에 국한되기보다 전체 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함.
- ※ 이에 자립생활 지원 조례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조례대상 확대가 필요함.

## 불임2 성북구 자립생활 체험홈 [1개소]

- 사업목적 : 단기 자립체험을 통해 장애인에게 맞는 개인별,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함.
- 운영기관 :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
- 운영기간 : 2024. 1. ~ 2024. 12.
- 소재지 : 노원구 공릉동 707 공릉2단지아파트 202동 10층( $39.6\text{m}^2$ )  
(월세 보증금 1,000만원, 월세 60만원)
- 입주정원 : 2명(기본 6개월, 최대 12개월)
- 입주대상 :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
- 주요프로그램 : 자아인식, 일상생활관리, 지역주민과의 교류, 직업탐색 자립생활 코디네이터에 의한 전문적 사회적응훈련
- 사업예산 : 54,903천원(전액 구비)